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대 표	Lee Yoke Yin	740411	2023.07.01. (2023.07.01, 1)		지점 총괄 관리	Pacific Life Re Service Singapore Pte, Limited. (2008.03 ~ 2023.05)	없음	충족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 고
지 점 대 표 (상임 및 등 기 임 원)	Lee Yoke Yin	740411	2023. 07.01 (2023.07.0 1. 1)		Pacific Life Re Service Singapore Pte. Limited. (2008.03 ~ 2023.05)	없	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비 고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 data-bbox="193 259 480 293"><사외이사 해당사항></p> <p data-bbox="185 331 791 398">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ol data-bbox="193 398 791 1099"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93 398 791 499">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li data-bbox="193 499 791 600">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li data-bbox="193 600 791 808">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li data-bbox="193 808 791 875">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li data-bbox="193 875 791 954">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li data-bbox="193 954 791 1099">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ol data-bbox="209 1122 791 1783"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209 1122 791 1357">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li data-bbox="209 1357 791 1570">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li data-bbox="209 1570 791 1783">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ol data-bbox="233 1783 791 2159"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233 1783 791 1962">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li data-bbox="233 1962 791 2159">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p data-bbox="799 685 1018 719">적용대상 아님</p>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p>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적용대상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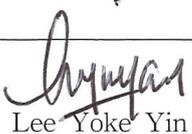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p>적용대상 아님</p>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p>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간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p> <p>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p> <p>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의 임직원</p> <p>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p>		적용대상 아님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p> <p>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p> <p>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p> <p>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p>		<p>해당사항 없음</p>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p>	해당사항 없음		
<p>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해당사항 없음		
<p>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해당사항 없음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p>	해당사항 없음		
<p>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p>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Lee Yoke Yin	직 위	지점대표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하고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p><u>종합 의견</u> 심사결과 적정함</p>			
<p>2023 7월 6일  퍼시픽 라이프리 인터내셔널, 한국지점 대표이사 Lee Yoke Yin (인)</p>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YOKE YIN LEE

Pacific Life Re International Limited

Vice President, Korea



경력사항(Job Experience)

Present –Vice President, Korea, Pacific Life Re International Limited, Korea Branch

2008 – Vice President, Finance, Pacific Life Re Services Singapore Pte. Limited

2004 - Accounts Manager, Interisk Asia Pte Ltd

2004 - Accounts Executive, QBE Insurance (Int’I) Ltd

1997 - Accounts Executive, Alea Europe

1993 - Treaty Technical Accounts & Claims Assistant, Equatorial Reinsurance Singapore Pte Ltd

학력 및 자격증 사항(Education and Qualifications)

Member of Chartered Accountant of Singapore

Member of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Bachelor of Science (Honours) in Management, from University of London

Yoke Yin Lee





Pacific Life Re Services Singapore Pte. Limited

182 Cecil Street #07-01/02 | Frasers Tower | Singapore 069547

T: +65 6311 5411

www.pacificlifere.com

Private & Confidential

6 July 2023

To Whom It May Concern

Re: Certificate of Employmen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ersonnel is the employee of Pacific Life Re International Limited, Korea Branch.

Employee Name: Lee Yoke Yin

Resident Registration No.: 740411-678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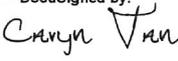
Employment Start Date: 1 June 2023

Job Title: VP, Korea

Lee Yoke Yin was employed by our Singapore branch, Pacific Life Re Services Singapore Pte. Limited. since 3 March 2008 in the position of VP, Finance, Asia.

Should you require further clarifica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People_Operations@PacificLifeRe.com.

Yours sincerely

DocuSigned by:

85B28B768AEA4B0...
Caryn Tan

Manager, People, Asia

Pacific Life Re | Asia



Pacific Life Re Services Singapore Pte. Limited

182 Cecil Street #07-01/02 | Frasers Tower | Singapore 069547

T: +65 6311 5411

www.pacificlifere.com

Private & Confidential

6 July 2023

To Whom It May Concern

Re: Certificate of Employment and No-Sanction History for Ms. Lee Yoke Yin

Dear Sir or Madam,

We hereby certify that:

(i) Ms. Lee Yoke Yin was employed by Pacific Life Re Services Singapore Pte. Limited from 3 March 2008 to 31 May 2023.

(ii) She was not subject to any sanctions or disciplinary actions under any financial related laws in domestic or foreign jurisdictions during her incumbency.

Should you require further clarifica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People_Operations@PacificLifeRe.com.

Yours sincerely

DocuSigned b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Caryn Tan".
85B28B768AEA4B0...

Caryn Tan

Manager, People, Asia

Pacific Life Re | Asia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United Kingdom in respect of Bermuda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Grahame Kent Smith

3. Acting in the capacity of Notary Public

4. Bears the seal/stamp GRAHAME KENT SMITH, NOTARY PUBLIC, BERMUDA

Certified

5. At Bermuda

6. On 9th June 2023

7. By the Governor and Commander-in-Chief of the Bermudas or Somers Islands or any member of his staff, signing on his behalf and using his official seal.

8. Number: 118,718

9. Seal



10. Signature: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Rownay A. Kerr".

Rownay A. Kerr
For Governor and
Commander-in-Chief

If this document is to be used in a country which is not a party to the Hagu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it should be presented to the consular section of the mission representing that country. An apostille or legalization certificate only confirms that the signature, seal or stamp on the document is genuine. It does not mean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re correct or that the Parliamentary Registry Office approves of the contents.

NOTARIAL CERTIFICATE

I, **GRAHAME KENT SMITH** of Carey Olsen Bermuda Limited, Rosebank Centre, 11 Bermudiana Road, Pembroke HM 08, Bermuda, Notary Public, Barrister & Attorney and Commissioner of Oaths confirm that the document attached herewith and marked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was signed before me by Christine Whitestone, who is personally known to me.

G. Kent Smith

G KENT SMITH

Notary Public

Dated: *9 Jun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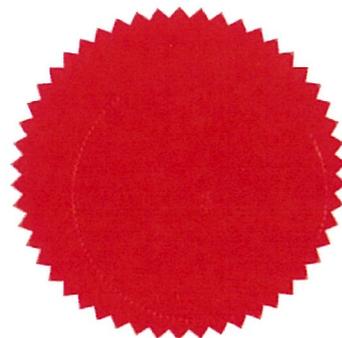
Carey Olsen Bermuda Limited

Rosebank Centre, 5th Floor

11 Bermudiana Road

Pembroke, HM 08, BERMUDA

+1 (441) 542-4500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Carey Olsen Services Bermuda Limited, Secretary of Pacific Life Re International Limited (the "Company"),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Bermuda, hereby certifies that on 9 June 2023, the following resolutions were duly passed by unanimous written resolution and are now in full force and effect:

"RESOLVED THAT

- (1) The resignation of Philip Eric Hay (Nationality: Australia, Date of Birth: November 12, 1964) as Korea Branch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be and is hereby accepted with effect from 1 July 2023;
- (2) Lee Yoke Yin (Nationality: Singapore, Date of Birth: April 11, 1974) is hereby appointed Korea Branch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effective as of 1 July 2023"

IN WITNESS WHEREOF, I have executed this certificate as of 9th day of June, 2023.

Pacific Life Re International Limited

By 

Name: Christine Whitestone

Title: For and on behalf of Carey Olsen Services
Bermuda Limited, Secretary